

남 양 주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1487호
2016년 1월 28일(목)

차 례

【 고 시 】

<input type="checkbox"/>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2
<input type="checkbox"/> 실시계획변경인가(소로1-89호,대로1-1호) 고시-----	3
<input type="checkbox"/> 실시계획변경인가(대로1-1호, 중로1-204호) 고시-----	5
<input type="checkbox"/> 실시계획변경인가(소로 퇴계원2-10호) 고시-----	7
<input type="checkbox"/>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일패 제122호, 제146호 근린공원 조성계획)-----	9
<input type="checkbox"/>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6
<input type="checkbox"/> 남양주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8
<input type="checkbox"/>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호평동 금배근린공원 조성계획)-----	28
<input type="checkbox"/>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월산6지구 근린공원, 문화공원 조성계획)-----	32
<input type="checkbox"/>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39
<input type="checkbox"/>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부영공원)-----	40
<input type="checkbox"/>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권리의무 이전신고 고시[화도읍]-----	43
<input type="checkbox"/>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 내용고시[진건읍]-----	44
<input type="checkbox"/>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 내용고시[진건읍]-----	45

【 공 고 】

<input type="checkbox"/> 오남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주민 공람-----	46
<input type="checkbox"/>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48
<input type="checkbox"/> 2015년 건축법이행강제금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49
<input type="checkbox"/> 마을버스 운행횟수 변경(현실화) 공고-----	51
<input type="checkbox"/>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시설2) 실시계획(변경)인가 주민공람 공고(수석동 송전탑)-----	53
<input type="checkbox"/>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 공고(전기공급시설2)-----	57
<input type="checkbox"/>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58

회 람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60
<input type="checkbox"/> 지금·도농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62
<input type="checkbox"/> 도로지정 공고(조한춧외 1인,2016-도시건축과-신축허가-2호)-----	64
<input type="checkbox"/> 도로지정 공고(이수흥, 2016-도시건축과-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2호)[와부읍]-----	65
<input type="checkbox"/> 도로지정 공고(박흥오)[와부읍]-----	66
<input type="checkbox"/> 소하천 점사용 허가 공고[조안면]-----	67

남 양 주 시 보

제1487호

남양주시 고시 제2016-28호

남양주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경기도고시 제2010-251호(2010.8.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 남양주시 고시 제2010-182호(2010.9.2.), 제2010-256호(2010.12.9.), 제2011-41호(2011.2.17), 제2011-65호(2011.3.17), 제2011-118호(2011.5.12), 제2011-194호(2011.8.25), 제2012-85호(2012.4.12), 제2012-135호(2012.6.21), 제2013-15호(2013.01.10), 제2013-55호(2013.02.21), 제2013-285호(2013.11.21.), 제2014-163호(2014.5.14.), 제2014-342호(2014.12.4.), 제2015-231호(2015.9.3.), 제2015-335호(2015.12.24.)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남양주 덕소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열람장소 : 관계도서(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재정비과(☎031-590-2386)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2016. 1. 28.

남 양 주 시 장

-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사항 없음
-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변경사항 없음
- 다. 재정비촉진지구의 경계가 표시된 지형도면(게재 생략)
- 라.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사항 없음

남 양 주 시 보

제1487호

마.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변경)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636,847	-	636,847	100.0	
주 거	소계	329,708	증) 228	329,936	51.8	
	주택용지	329,708	증) 228	329,936	51.8	면적변경
근린생활	소계	4,818	-	4,818	0.8	
	근생용지	4,818	-	4,818	0.8	
상 업	소계	57,435	증) 332	57,767	9.0	
	상업용지	57,435	증) 332	57,767	9.0	면적변경
종 교	소계	3,880	-	3,880	0.6	
	종교시설	3,880	-	3,880	0.6	
기반시설	소계	224,129	감) 560	223,569	35.2	
	도로	124,737	감) 59	124,678	19.6	선형 및 면적변경
	공원·녹지	52,570	감) 501	52,069	8.2	면적변경
	미래공공용지	6,504	-	6,504	1.0	
	하천	4,905	-	4,905	0.8	
	학교	23,409	-	23,409	3.7	
	공공청사(지구대)	790	-	790	0.1	
기타(유보지 등)		16,877	-	16,877	2.7	

주) 존치관리구역(50구역) 내 도로설계 반영에 따른 조정

2)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

○ 기정 7,663세대 / 19,972인 ⇒ 변경 7,664세대 / 19,975인

구분	주택수(세대)			구성비 (%)	인구수(인)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7,663	증) 1	7,664	100.0	19,972	증) 3	19,975	100.0	
촉진구역 소계		6,925	증) 1	6,926	90.4	18,009	증) 3	18,012	90.2
도시 개발	소계	-	-	-	-	-	-	-	
	85㎡초과	-	-	-	-	-	-	-	
	60~85㎡	-	-	-	-	-	-	-	
	40~60㎡	-	-	-	-	-	-	-	
	40㎡이하	-	-	-	-	-	-	-	
주택 재개발	소계	6,087	증) 1	6,088	79.4	15,830	증) 3	15,833	79.2
	85㎡초과	930	감) 55	875	11.4	2,418	감) 143	2,275	11.4
	60~85㎡	2,509	증) 49	2,558	33.4	6,524	증) 127	6,651	33.3
	40~60㎡	1,979	증) 21	2,000	26.1	5,147	증) 55	5,202	26.0
	40㎡이하	669	감) 14	655	8.5	1,741	감) 36	1,705	8.5
도시 환경 정비	소계	838	-	838	11.0	2,179	-	2,179	11.0
	85㎡초과	214	-	214	2.8	556	-	556	2.8
	60~85㎡	334	-	334	4.4	869	-	869	4.4
	40~60㎡	290	-	290	3.8	754	-	754	3.8
	40㎡이하	-	-	-	-	-	-	-	
존치관리구역 소계		738	-	738	9.6	1,963	-	1,963	9.8

주) 덕소2구역 세대수 증가에 따른 변경

남 양 주 시 보

제1487호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 변경사항 없음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변경)

가) 공원·녹지계획(변경)

(1) 촉진지구 내 공원·녹지 확보계획(변경)

구분	단위	현황	계획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인구	인	13,379	19,972	증) 3	19,975	
세대수	세대	5,332	7,663	증) 1	7,664	
공원개소	개소	3	12	-	12	
녹지개소	개소	2	6	-	6	
공원·녹지면적	m ²	27,945	52,570	감) 501	52,069	
세대당 공원·녹지면적	m ² /세대	5.2	6.9	감) 0.1	6.8	
공원·녹지율	%	4.2	8.2	-	8.2	

(2) 공원·녹지 계획 면적 비교(변경)

구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			계획		비고
	구역면적의 5%	세대당 3m ²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공원·녹지 면적(m ²)	31,842.35	22,989.0	22,992.0	52,570.0m ²	52,069.0m ²	도로선형 변경에 따른 완충녹지면적 감소 (감 501m ²)

(3) 공원·녹지 시설별 계획(변경)

구분	세부시설명	개소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8	-	18	52,570	감) 501	52,069	
공원	소계	12	-	12	33,467	-	33,467	
	근린공원	2	-	2	22,619	-	22,619	
	어린이공원	5	-	5	7,983	-	7,983	
	소공원	5	-	5	2,865	-	2,865	
녹지	소계	6	-	6	19,103	감) 501	18,602	
	완충녹지	4	-	4	17,102	감) 501	16,601	도로선형 변경에 따른 완충녹지면적 감소
	경관녹지	2	-	2	2,001	-	2,001	

5) 교통계획

○ 변경사항 없음

남 양 주 시 보

제1487호

6) 경관계획

○ 변경사항 없음

7)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사항

○ 변경사항 없음

8)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 변경사항 없음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

가)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변경)

구 분	구역명	구역면적(㎡)	계획용적률	건폐율	최고높이
기정	덕소2구역	52,327	247.8%이하	60%이하	-
변경	덕소2구역	52,327	245.0%이하	60%이하	-
기정	덕소3구역	196,939	236.0%이하	60%이하	-
기정	덕소4구역	30,584	248.7%이하	60%이하/70%이하	24층(69m) (문화재현상변경구간 내 적용)
기정	덕소5A구역	28,359	500.0%이하	80%이하	-
기정	덕소5B구역	19,439	500.0%이하	80%이하	-
기정	덕소6A구역	12,031	275.0%이하	60%이하	-
기정	덕소7구역	35,264	270.0%이하	60%이하	-
기정	도곡1구역	32,420	235.0%이하	50%이하	19층(55m)
기정	도곡2구역	41,188	240.9%이하	60%이하	8층(29m), 12층(40m) 18층(57m), 22층(68m)

주1) 건폐율은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상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규정 적용

주2) 사업시행인가 시 용적률산정기준에 따른 추가용적률 각 항목에 대하여 사업계획 반영 여부 및 이행 수준에 따라 계획용적률에 포함된 추가 용적률은 미부여 또는 삭감될 수 있음

주3) 덕소5A, 5B구역은 용도용적제 적용 기준(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의 당해 계획용적률은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에 따라 변경 적용

주4) 촉진사업구역 내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수립하고, 최고높이를 완화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 단계에서 건축법령에 따라 남양주시 건축위원회 심의 등 절차 이행을 통해 별도 지정. 단, 문화재현상변경 심의 결과 반영

주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1항에 의하여 동법 시행령 별표3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입주하는 임대주택 세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높일 수 있음

○ 용도용적제 적용 기준(변경없음)

나) 기타 건축계획 및 건축운영 지침(변경)

○ 「남양주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제11장 재정비촉진 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에 명시

남 양 주 시 보

제1487호

다)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한 경미한 변경

○ 변경사항 없음

10)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 변경사항 없음

11) 임대주택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

구분		전체 계획 세대수	총 임대 주택수	법정사항(의무)			비법정사항 (의무)	비법정사항 (권장)		비고	
				일반임대			순환용주택	부분임대	역세권 소형평형		
				40㎡이하	40~60㎡	60~85㎡	40~60㎡	40㎡이하			
합계	기정	6,925	1,364	418	577	-	-	169	200		
	변경	6,926	1,198	373	459	-	-	166	200		
도시개발	덕소1	기정	-	-	-	-	-	-	-		
주택 재개발	덕소2	기정	998	202	56	118	-	-	28	-	
		변경	999	36	11	-	-	-	25	-	
	덕소3	기정	2,908	590	152	343	-	-	95	-	
	덕소4	기정	484	293	28	55	-	-	10	200	
	덕소6A	기정	212	8	-	3	-	-	5	-	
	덕소7	기정	321	8	4	-	-	-	4	-	
	도곡1	기정	406	70	48	22	-	-	-	-	
	도곡2	기정	758	130	130	-	-	-	-	-	
도시환경 정비	덕소5A	기정	518	39	-	22	-	-	17	-	
	덕소5B	기정	320	24	-	14	-	-	10	-	

주) 덕소5A, 5B구역은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비율 80%를 적용한 예시이며, 용도용적제 범위 내에서 주거비율에 따라 변경 적용

12)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가) 단계별 추진계획

구분	사업기간			해당구역	단계별 총량	
	추진시기	이주시기	입주시기			
1단계	2010	2012.10	2015.10	덕소5A·7구역, 도곡1구역	597세대	
2단계	2010	2014.10	2017.10	덕소3·4·6A구역, 도곡2구역	3,158세대	
3단계	기정	2010	2016.10	2018	덕소2·5B구역	882세대
	변경	2010	2016.10	2018	덕소2·5B구역	883세대

주) 시장은 주변지역의 이사철 등 전세수요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구역별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 인가 시기를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조정할 수 있음

남 양 주 시 보

제1487호

나) 단계별 이주계획

- 이주총량은 원칙적으로 각 단계의 이주수요 범위(1단계:597세대, 2단계:3,158세대, 3단계:883세대) 내에서 관리.
- 다만,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 주변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공공임대주택의 순환용 주택 활용 가능 물량 등을 고려하여 2,000세대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기간의 변경 또는 해당구역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함

13) 기타계획(방재계획, 정보화계획, 에너지순환계획, 자족성계획, 특성화계획, 친환경건축물계획)

- 변경사항 없음

14)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

- 변경사항 없음

15) 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한 자원조달에 관한 사항

- 변경사항 없음

16)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변경)

가) 덕소2구역(주택재개발사업)

(1) 재정비촉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사항 없음

(2) 정비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나)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 구 또는 획 지 구 분		위 치	주 용 도	건 폐 율 (%)	용 적 륜 (%)	최 고 높 이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기 정	덕소2-1	40,612	2-1	40,612	와부읍 덕소리 453-15 일원	공동주택	60이하	247.80이하	-
	덕소2-3	720	2-3	720	와부읍 덕소리 456-25 일원	종교시설	60이하	-	-
변 경	덕소2-1	40,612	2-1	40,612	와부읍 덕소리 453-15 일원	공동주택	60이하	245.00이하	-
	덕소2-3	720	2-3	720	와부읍 덕소리 456-25 일원	종교시설	60이하	-	-
기 정	주택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 세대수 998세대 [법정임대 174세대 (17.4%)] - 전용면적 40㎡이하 : 56세대 (5.6%) - 전용면적 40㎡~60㎡이하 : 438세대 (43.9%) - 전용면적 60㎡~85㎡이하 : 437세대 (43.8%) - 전용면적 85㎡초과 : 67세대 (6.7%)						
변 경			· 총 세대수 999세대 [법정임대 11세대 (1.1%)] - 전용면적 40㎡이하 : 42세대 (5.2%) - 전용면적 40㎡~60㎡이하 : 459세대 (45.9%) - 전용면적 60㎡~85㎡이하 : 486세대 (48.7%) - 전용면적 85㎡초과 : 12세대 (1.2%)						
기 정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간선도로변 : 3m · 대지경계선 : 3m						

주1) 획지별 용적률은 구역 전체 계획용적률 이내에서 사업시행시 탄력적으로 적용

주2) 촉진사업구역 내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수립하고, 최고높이를 완화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 단계에서 건축법령에 따라 남양주시 건축위원회 심의 등 절차 이행을 통해 별도 지정. 단, 문화재현상변경 심의결과 반영

남 양 주 시 보

제1487호

(다)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결정 구분	시행방법	사업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감 예상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기정	변경	
기정	주택재개발사업	2단계 (2010년~2018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증) 197세대		-
변경	변경없음			증) 198세대		-

(라)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등 기타계획(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나) 덕소3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사항 없음

다) 덕소4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사항 없음

라) 덕소5A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 변경사항 없음

마) 덕소5B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 변경사항 없음

바) 덕소6A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사항 없음

사) 덕소7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사항 없음

아) 도곡1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사항 없음

자) 도곡2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사항 없음

17)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 중 용도지역의 결정·변경과 도시계획시설(신설,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은 재정비촉진계획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권자(시장)가 별도 결정·고시한다.

가) 재정비촉진지구 결정조서

○ 변경사항 없음

나)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사항 없음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사항 없음

남 양 주 시 보

제1487호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1) 교통시설(변경)

○ 도로(변경)

- 도로총괄표

구분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22	8,402 (6,785)	138,608 (119,366)	7	3,725 (3,613)	75,479 (73,239)	8	3,038 (2,347)	43,626 (34,437)	7	1,639 (825)	19,503 (11,690)
	변경		8,403 (6,786)	138,580 (119,338)	7	3,725 (3,613)	75,420 (74,180)	8	3,039 (2,348)	43,657 (34,468)	7	1,639 (825)	19,503 (11,690)
대로	기정	1	130 (130)	3,900 (3,900)	-	-	-	-	-	-	1	130 (130)	3,900 (3,900)
중로	기정	15	7,277 (6,231)	127,310 (111,830)	5	3,510 (3,398)	73,329 (71,089)	6	2,754 (2,231)	41,354 (33,509)	4	1,013 (602)	12,627 (7,232)
	변경	15	7,278 (6,232)	127,251 (111,771)	5	3,510 (3,398)	73,239 (70,999)	6	2,755 (2,232)	41,385 (33,540)	4	1,013 (602)	12,627 (7,232)
소로	기정	6	995 (424)	7,398 (3,636)	2	215 (215)	2,150 (2,150)	2	284 (116)	2,272 (928)	2	496 (93)	2,976 (558)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기정	대로	2	208	30	보조 간선	130	중로 2-310	중로 1-316	일반 도로	-	-	촉진 지구내
기정	중로	1	21	20~23	보조 간선	1,560	중로 1-312	외부읍 덕소리 중1-5	일반 도로	-	경고108호 ('98.11.7)	촉진 지구외
기정	중로	1	312	20	보조 간선	99	중로 1-313	중로 1-21	일반 도로	-	-	촉진 지구내
기정	중로	1	313	20	보조 간선	1,248 (1,136)	덕소리7호 교통광장	중로 2-2	일반 도로	-	-	선형 조정
변경	중로	1	313	20	보조 간선	1,248 (1,136)	덕소리7호 교통광장	중로 2-2	일반 도로	-	-	
기정	중로	1	314	23	보조 간선	1,043	중로 1-313	중로 1-316	일반 도로	-	-	촉진 지구내
기정	중로	1	315	20	보조 간선	83	중로 1-314	덕소리 산30-6	일반 도로	-	-	촉진 지구내
기정	중로	1	316	20	보조 간선	1,037	중로 2-326	중로 1-22	일반 도로	코오롱 APT	-	촉진 지구내
기정	중로	2	2	15	보조 간선	1,461 (938)	중로 1-313	외부읍 도곡리 중1-24	일반 도로	-	남양주63호 ('97.8.18)	-
기정	중로	2	5	15	국지 도로	256	중로 1-313	외부읍 덕소리 중1-21	일반 도로	-	경고381호 ('96.12.30)	촉진 지구외
기정	중로	2	6	15	보조 간선	1,305	외부읍 덕소리 7호광장	중로 1-313	일반 도로	강변삼익 APT	경고293호 ('93.9.11)	촉진 지구외

남 양 주 시 보

제1487호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기정	중로	2	310	18	집산 도로	254	덕소리 중1-310	대로 3-08	일반 도로	-	남양주71호 (’04.6.21)	축진 지구외
기정	중로	2	311	15~18	집산 도로	254	덕소리 중1-310	대로 3-208	일반 도로	-	경고5040호 (’04.4.14)	축진 지구외
기정	중로	2	325	15	집산 도로	303	중로 1-316	덕소리 중2-310	일반 도로	-	-	축진 지구내
기정	중로	2	327	15	특수 도로	49	중로 2-331	덕소리 488-2	보차혼 용도로	-	-	축진 지구내
기정	중로	2	328	15	특수 도로	298	중로 1-314	중로 2-326	보차혼 용도로	-	-	
기정	중로	2	329	15	특수 도로	125	중로 2-328	중로 1-313	보차혼 용도로	-	-	선형 및 노선 조정
변경	중로	2	329	15	특수 도로	126	중로 2-328	중로 1-313	보차혼 용도로	-	-	
기정	중로	3	8	12	보조 간선	10,065	중로 3-314	조안면 진중리 대3-8	일반 도로	-	경고109호 (’87.4.20)	축진 지구외
기정	중로	3	10	12~14	국지 도로	471 (60)	외부읍 덕소리 중2-6	외부읍 덕소리 중1-313	일반 도로	강변삼익 APT	남양주53호 (’93.12.21)	-
기정	중로	3	14	12	보조 간선	114	외부읍 도곡리 중2-2	소로 외부 2-104	일반 도로	-	남양주57호 (’96.10.30)	축진 지구외
기정	중로	3	30	12~14	집산 도로	248	중로 3-10	중로 3-313	일반 도로	-	남고82호 (’99.10.2)	축진 지구외
기정	중로	3	39	12	집산 도로	184	외부읍 덕소리 중1-22	덕소리 405-3	일반 도로	-	남양주35호 (’03.5.12)	축진 지구외
기정	중로	3	220	12	국지 도로	35	중로 1-313	덕소리 201-1	일반 도로	-	경고115호 (’95.5.9)	축진 지구내
기정	중로	3	313	12	집산 도로	150	중로 3-30	중로 1-313	일반 도로	-	-	축진 지구내
기정	중로	3	314	12	보조 간선	357	중로 2-2	중로 3-8	일반 도로	-	-	축진 지구내
기정	소로	외부1	5	10	국지 도로	161	중로 1-314	덕소리 산19-1	일반 도로	-	-	축진 지구내
기정	소로	외부1	6	10	국지 도로	54	중로 1-316	덕소리 195-2	일반 도로	-	-	축진 지구내
기정	소로	외부2	24	8	국지 도로	186 (18)	중로 3-314	덕소리 산49	일반 도로	-	경고242호 (’88.9.8)	-
기정	소로	외부2	104	8	국지 도로	98	중로 3-14	도곡리 977-5	일반 도로	-	-	축진 지구내
기정	소로	외부3	12	6	국지 도로	236	덕소 중2-6	덕소 중3-10	일반 도로	-	경고595호 (’78.12.23)	축진 지구외
기정	소로	외부3	13	6	국지 도로	198	중로 3-13	덕소 소로 외부3-12	일반 도로	-	경고242호 (’88.9.8)	-
기정	소로	외부3	15	6	국지 도로	452 (49)	중로 3-314	배수장	일반 도로	-	경고242호 (’88.9.8)	-
기정	소로	외부3	77	6	국지 도로	44	중로 1-313	덕소리 605-2	일반 도로	-	-	축진 지구내

남 양 주 시 보

제1487호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결정) 사유
중로1-313	중로1-313	▶ 조서상 변경내용 없음 - 폭원:20m, 연장:1,248m	▶ 존치지역 내 도로설계 반영에 따른 선형 조정 (감 90.0㎡)
중로2-329	중로2-329	▶ 연장 변경 - 연장 : 125m→126m (증 1m)	▶ 존치지역 내 도로설계 변경에 따른 선형 및 연장 조정(증 31.0㎡)

○ 철도(변경없음)

(2) 공간시설(변경)

○ 녹지(변경)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녹지	완충 녹지	와부읍 덕소리 덕소역 부근(중앙선)	15,506	감) 501	15,005	건고 제194호 (97.06.12.)	
기정	17	녹지	완충 녹지	와부읍 덕소리 중2-6호선변	26,198	-	26,198	경고 제293호 (93.09.11.)	
기정	222	녹지	완충 녹지	중로 1-315호선변	1,107	-	1,107	-	
기정	223	녹지	완충 녹지	중로 1-312호선변	524	-	524	-	
기정	225	녹지	완충 녹지	중로 3-316호선변	405	-	405	-	
기정	303	녹지	경관 녹지	와부읍 도곡리 1027-14 일원	389	-	389	-	
기정	304	녹지	경관 녹지	와부읍 도곡리 917-16 일원	1,612	-	1,612	-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결정) 사유
1	녹지 (완충녹지)	▶ 변경(면적 감소) - 면적 : 15,506㎡→15,005㎡ 감) 501㎡	▶ 도로선형변경에 따른 인접 완충녹지 면적 감소 (감 501㎡)

○ 공원(변경없음)

○ 공공공지(변경없음)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4) 방재시설(변경없음)

바.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관련사항은 「남양주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에 따름 사.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